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부서)의 장
람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http://www.daedeok.go.kr</p>

제2020-24호
2020. 4. 1.(수)

차 례

공 고(1)

- 분할개시결정 공고(공고 제2020-327호) 1

공 람									
--------	--	--	--	--	--	--	--	--	--

분할개시결정 공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 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대덕구청 지적과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 2020. 4. 1. ~ 2020. 4. 22.
2. 공고내용 :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 결정

토지 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동의인 외 인
구	동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대덕구	비래동	560-16	대	860.1	조혜*	64.07.02	대전광역시 대덕구 **** **	조혜* 외 3인